

1. 개정 이유

현행 건설공사 착공 이후 오염토양이 발견되어 반출정화를 인정함에 있어 그 판단기준을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공공의 이익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반출정화 인정제도의 합리성과 행정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.

아울러 「공공주택특별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및 「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반도체클러스터 조성공사와 같이 국가 정책적으로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착공 여부와 관계없이 반출정화의 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환경적 안전성을 유지하면서도 관계 부처 간 정책 연계성과 행정의 유연성을 강화하려는 것임.

정부는 지난 2025년 9월 7일 현 정부 내 수도권 135만호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여 공공주택사업을 신속하게 추진 중이며, 2026년 2월 10일 제정된 「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라 반도체 산업 생태계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음. 이와 같이 공익적 목적을 위해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국가역점사업 및 국가전략산업에 대해 착공 이전 단계부터 오염토양 반출정화에 관한 신속한 행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반출정화 인정기준 보완(제19조제3호)

- 1) 건설공사 착공 이후 공사과정에서 오염토양이 발견되어 반출정화를 인정하는 경우, 그 판단기준을 현행 “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”에서 “공공의 이익 및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”으로 확대
 - 2) 관할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이 환경적 요소와 공익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반출정화 인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함
- 나. 공공주택사업 및 반도체클러스터에 대한 반출정화 특례 신설(제19조 제3호 단서)

- 1) 「공공주택특별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및 「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공사의 경우,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요청이 있으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착공 여부와 관계없이 반출정화의 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규정을 신설함.
- 2) 이는 정부의 135만호 주택공급 계획 발표(2025.9.7.), 「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(2026.2.10. 제정) 등에 따른 국가 역점사업 및 국가전략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임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6. . . ~ . 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

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제3호 중 “정화하면”을 “정화하면 공공의 이익,”으로 하고,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다음 각 목의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해당 목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으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착공 여부와 관계없이 반출정화의 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다.

가. 「공공주택특별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으로 시행

건설공사: 국토교통부장관

나. 「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2호

에 따른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건설공사: 산업통상부장관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9조(반출정화사유) 법 제15조의3제3항 단서에서 “부지의 협소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”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. 1. 2. (생략) 3.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착공 이후의 공사과정에서 오염토양이 발견된 경우로서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서 오염토양을 <u>정화하면</u>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관할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<u><단서 신설></u> <u><신설></u>	제19조(반출정화사유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2. (현행과 같음) 3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정화하면 공공의 이익,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--. 다만, 다음 각 목의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해당 목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으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착공 여부와 관계없이 반출정화의 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다.</u> <u>가. 「공공주택특별법」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공주택사</u>

<u><신 설></u> 4. ~ 9. (생 략)	<u>업으로 시행 건설공사: 국</u> <u>토교통부장관</u> <u>나. 「반도체산업 경쟁력 강</u> <u>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</u> <u>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반</u> <u>도체클러스터 조성을 위한</u> <u>건설공사: 산업통상부장관</u> 4. ~ 9. (현행과 같음)
--	--